화재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

제1조(보험계약의 성립)

- 1.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.
- 2.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승낙한 것으로 본다.
- 3. 회사가 승낙한 후라도 필요한 추가 심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.
- 4.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제2조(보험금 지급 및 보상 범위)

- 1.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.
- 2.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- 3. 다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.
 - (a) 계약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.
 - (b)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.
 - (c) 기타 회사가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
- 4. 계약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, 회사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계약 해지 및 환불 규정)

- 1.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,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보험료 환급이 불가하다.
- 2.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, 보험료의 30%만 환불되며, 나머지는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된다.
- 3.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보험료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4.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해당 청구 건에 대한 심사는 중단되며,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.
- 5. 계약 해지 시, 회사는 해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

제4조(보험료 인상 및 변경)

- 1. 회사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2. 계약 갱신 시 보험료가 자동 인상될 수 있으며,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.
- 3. 회사는 보험료 인상 시 최소 30일 전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